

FTA BRIEF

초보 수출기업들을 위한
FTA 활용 가이드

Vol. 09
November 2025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4 by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초보 수출기업들을 위한 FTA 활용 가이드

FTA 활용 절차 한 눈에 보기

1 FTA 적용 가능 국가 확인 (4쪽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FTA 체결(발효)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 HS 코드 확인 (5쪽 확인)

HS 코드에 따라 FTA 상대국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수출 전 정확한 HS 코드 확인은 필수입니다.

3 협정 세율 확인 (7쪽 확인)

국가별 FTA 관세 인하 방식과 철폐 시기가 다르므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협정별·품목별 적용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8쪽 확인)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정 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5 특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10쪽 확인)

특혜 원산지증명서(C/O)는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제품임을 증빙해주는 필수 서류로,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사후관리 및 증빙보관 (12쪽 확인)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의 적용 등 사후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한 필요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류 보관의 의무)

-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01 FTA 첫 걸음

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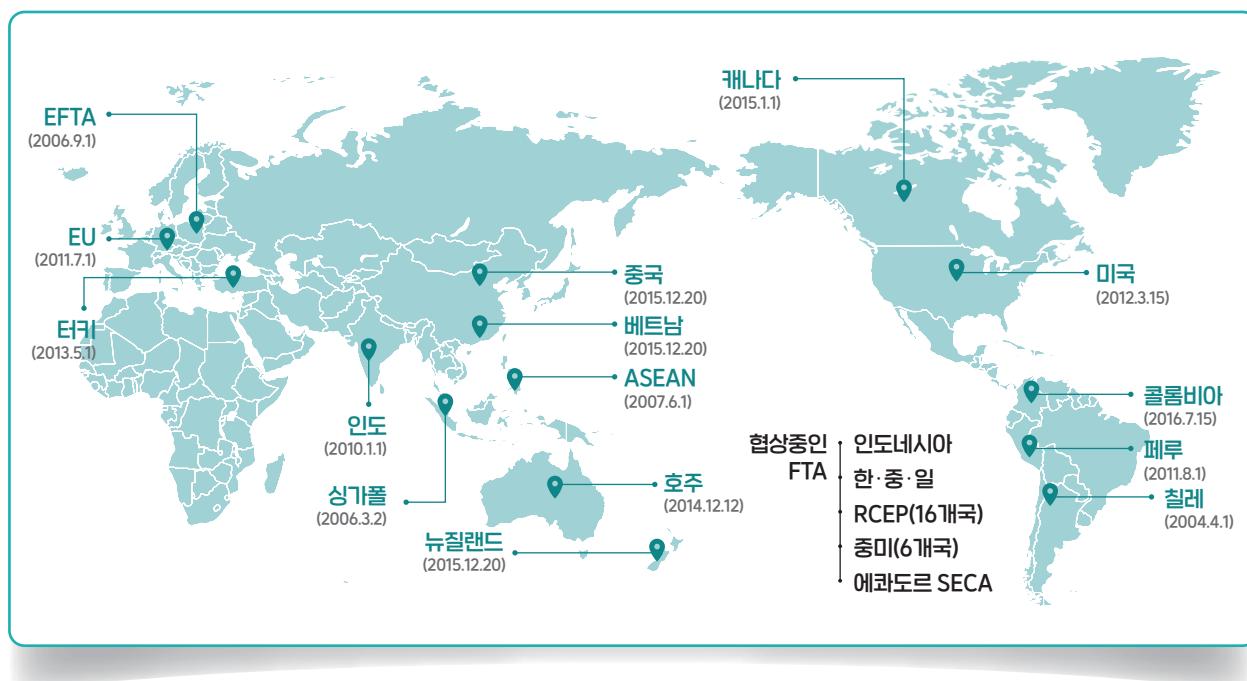
FTA(Free Trade Agreement)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일종입니다.

* 지역무역협정 :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 내의 국가 간 체결하는 무역 협정을 의미

FTA 효과

FTA를 활용할 경우,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수출·수입) 시 기존의 기본세율(일반관세율) 대신 협정세율(감축 또는 무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해당 협정의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를 통해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FTA 체결 발효국 현황



FTA 활용 사례

국내 접착 소재 제조업체 Y사는 적하·양하용 기계설비(HS 8428.39호)에 대해 한-중 FTA를 적용받아 관세율을 5%에서 0%로 낮추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관세 절감 효과가 수출 단가 인하로 이어져 수출 물량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Y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FTA 적용 가능 시장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해외 판로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국	한국 ◎ 중국	
품목명	적하·양하용의 기계류	(HS 코드) 제8428.39호
FTA 활용 실익(관세율)	기본관세율(5%) ◎ 협정세율(0%)	

02 내 물품의 HS 코드를 정확히 알아볼까요?

✓ HS 코드의 의미 및 구조

HS 코드는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산업별 다양한 품목이 01류~97류(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고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품목 번호로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만든 국제표준코드이며,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 7단위 이상의 코드(ex. 중국 8단위, 일본 9단위 등)는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HS 비교 방법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홈페이지(www.unipass.customs.go.kr)  세계 HS  HS 비교에서 원하시는 국가 및 세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HS 8428.39호 품목분류 예시

한국(2025년)	한국(2025년) ▾	유럽연합	유럽연합 ▾	중국	중국 ▾	미국	미국 ▾	일본	일본 ▾
품목번호	품명(2025년)	품목번호	품명(2025년 10월)	품목번호	품명(2025년)	품목번호	품명(2025년 10월)	품목번호	품명(2025년 4월)
8428 39 0000	기타	8428 39	-- 기타	8428 39	-- 다른 :	8428 39 0000	기타	8428 39 0000	기타
		8428 39 2000	--- 로울러 컨베이어	8428 39 10	--- 체인 방법				
		8428 39 9000	--- 기타	8428 39 1000	--- 기타 체인형 연속 수송화물리프트 및 컨베이어				
				8428 39 20	--- 롤러방법				
				8428 39 2000	롤러형 연속수송화물 리프팅 및 컨베이어				
				8428 39 90	--- 다른				
				8428 39 9010	반도체 등급 화학 충진기				
				8428 39 9090	기타 미등록 연속화물 들어올리기 및 운반 기계				

✓ 정확한 HS 코드 확인 방법

HS 품목번호를 조회하는 경로는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홈페이지(www.unipass.customs.go.kr) 이용을 권고드립니다.

품목분류 검색 방법 예시_커피

①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 접속하여 "세번·상품검색" 란에 "커피" 검색



② 검색 결과에서 가장 적합한 HS코드를 선택(구체적 키워드 사용 권장)

전체 19 건 페이지 당 10		품명 [ 한국 2025년]	
품목 번호		한글	영문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겉 데기와 겉 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coffee husks and skins; 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 in any proportion.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offee, not roasted :

* "커피" 대신 "볶은 커피"와 같이 구체적인 키워드를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생활 표준품명과 관세율표상의 품명 표현이 상이할 경우 동일한 물품이라도 HS 분류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품명에 대한 상세한 HS 코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해석 상이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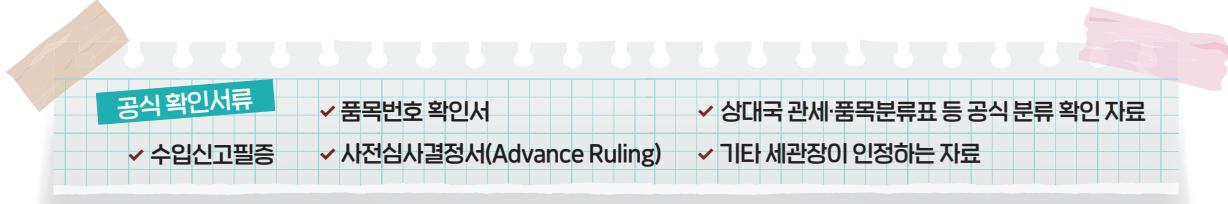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HS 협약에 근거하여 일률일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나 국가 간 문화나 기술수준 및 신기술의 차이 등으로 동일한 품목에도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분류 해석 상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품목분류 해석 상이 시 업무처리 지침 간단 요약

① 수출 시 우리나라 HS 번호와 협정상대국 HS 번호가 다른 경우

- 협정상대국의 HS 번호 기재 :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확인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가능



- 동일 HS 번호 원산지증명서 반복 발급 신청 시 :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로 증빙 제출 생략 가능
- 유의 사항 : HS 번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국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 시 위험 존재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예외적 허용)

② 수입 시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

- 'HS 번호'가 필수 기재항목이 아닌 협정 : [EU](#), [EFTA](#), [튀르키예](#)
 - ④ HS 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HS 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인 협정 : [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APTA](#)
 - ④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번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HS 번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④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시 보완 요청 및 원산지 조사 의뢰

③ 원산지증명서 품명과 송품장 품명이 다른 경우

-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며, 무역관행 상 다르게 기재되더라도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위와 관련한 품목분류 상이 사례 및 이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의 상세 설명은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 ④ 'FTA BRIEF(2024-07호, 「FTA 상대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HS와 한국 수출 HS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국가별 관세혜택(협정세율)을 확인해보세요 !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여부 확인

우리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품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FTA는 협정세율 적용 품목이라 하더라도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및 적정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협정세율과 기본 실행세율 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FTA 활용 실익이 없으므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등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FTA 상대국측 협정세율 조회방법

상대 국가의 세율 조회 절차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① 세계 HS ② 관세율표 ③ 국가 선택 ④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해당 세번에 대한 협정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HS 8428.39호(그 밖의 연속작동식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리)에 대한 중국측 MFN(실행세율)은 5%, 한-중 FTA는 0 또는 1.3%로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할 때 3.7 또는 5%의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측 HS 8428.39호 이하 세번 협정세율 조회

국가	중국	해당년도	2025년
품목번호	8428.39-1000	단위(중량/수량)	/ 단위표기
품명	기타 체인형 연속수송화물리프트 및 컨베이어		
영문	Other chain-type continuous transport cargo lifts and conveyors		
원문	其他链式连续运送货升降、输送机		
간이정액환급	해당사항 없음		
관세	기본세율 : 30%		

※ 각 국의 관세율표의 세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국의 관세율표 공표 시기 등이 다르므로 반영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 해설서보기 세율부호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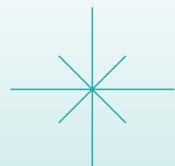
구분번호	관세율	관세구분
MFN	5%	최혜국
FTA_KOR	1.3%	대한민국

국가	중국	해당년도	2025년
품목번호	8428.39-2000	단위(중량/수량)	/ 단위표기
품명	롤러형 연속수송화물 리프팅 및 컨베이어		
영문	Roller type continuous transport cargo lifting and conveyor		
원문	辊式连续运送货升降、输送机		
간이정액환급	해당사항 없음		
관세	기본세율 : 30%		

※ 각 국의 관세율표의 세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국의 관세율표 공표 시기 등이 다르므로 반영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 해설서보기 세율부호정의

구분번호	관세율	관세구분
MFN	5%	최혜국
FTA_KOR	0%	대한민국



04

내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까요?

②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FTA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인지 판정하기 위해선 HS 코드별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합니다.

* 원산지 상품 :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운송요건을 충족한 상품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원산지기준으로 나누며 일반기준은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품목별원산지기준은 각 HS 코드(1류~97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설정된 충족 요건을 의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 포장용기·운송 포장 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제3국 보세전시용품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부록 FTA 용어를 참고해주세요.

③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 접속 ② FTA 자료실 ②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② 국가(협정) 선택 ② HS 코드를 입력하시면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HS 8428.39호(그 밖의 연속작동식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리)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체약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법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에서 산출된 부가가치가 총 제조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¹⁾

1) 한-중 fta에서의 부가가치기준 산출은 공제법을 적용합니다. 공제법에 대한 개념은 부록 FTA 용어를 참고해주세요.

HS 8428.39호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전체(All FTA)	칠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2012
아세안 ASEAN 2017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미국 USA
튀르키예 Turkiye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중국 China	뉴질랜드 NewZealand
베트남 Vietnam	콜롬비아 Colombia	중미 Central America	영국 Great Britain	RCEP
이스라엘 Israel	캄보디아 Cambodia	인도네시아 Indonesia	필리핀 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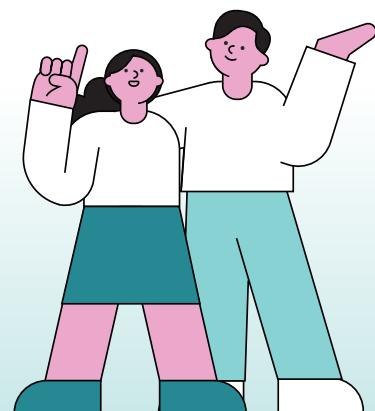
HS코드(HS Code) 한글 품목명(Korea Item Name) 영문 품목명(English Item Name)

842839

검색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작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리)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for example, lifts, escalators, conveyors, teleferics).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목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842839	1	기타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Other	



05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받아보세요!

FTA 원산지증명서(C/O)의 개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물품이 생산된 국가, 즉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vs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 (1)기관발급과 (2)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기관 발급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물품이 생산된 국가, 즉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서식 및 양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②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eCO)을 통해 가능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eCO)을 통한 신청은 관할 대한상공회의소의 발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율 발급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교부한 시점부터 FTA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협정별로 정한 서식 요건 및 기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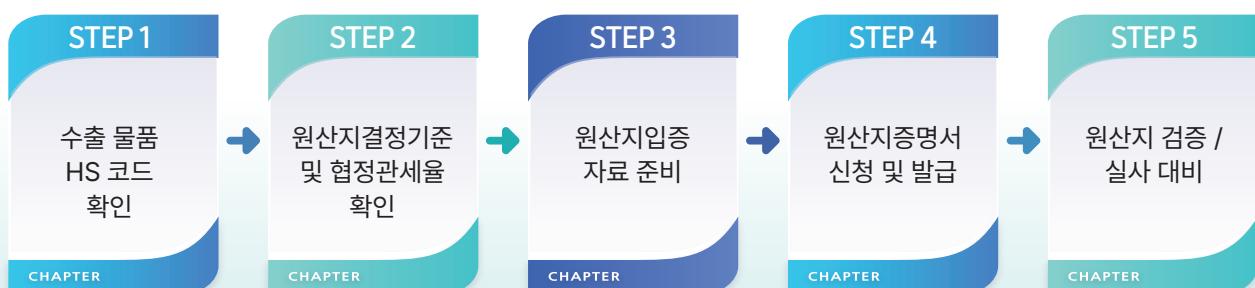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급 주체	지정 기관(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인증수출자)
심사	기관 심사	자체 심사 및 소명
용도	기관 발급 의무 협정	수출자 선택 가능

자율발급 주의 사항

자율발급 FTA의 경우에는 BOM(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전에 작성·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사후 검증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단계별 신청 절차 상세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https://cert.korcharm.net/>) ☺ 업무안내 탭 ☺ FTA 원산지 증명서 ☺ 신청 및 발급 절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눈에 보는 협정별 C/O 발급 방식 비교표

구분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방법	유효기간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통일증명서식	2년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 싱가포르: 세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기업에 한함)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1년
한-EFTA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아세안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아세안: 각국 정부기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AK 양식)	1년
한-인도	기관증명	정부지정기관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EU	자율증명	수출자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페루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미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형양식 없음 (권고서식)	4년
한-튀르키예	자율증명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한-콜롬비아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호주	자율증명 기관증명(호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도 가능)	정형양식 없음	2년
한-캐나다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뉴질랜드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송품장 신고방식 협정상 표준서식	2년
한-베트남	기관증명	• 베트남: 산업무역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	기관증명	• 중국: 해관총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	1년
한-중미	자율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영	자율증명	수출자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1년
RCEP	기관증명 자율증명	정부지정기관 / 인증수출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효 후 10년내 이행 /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년내 이행	당사국 합의양식	1년
한-이스라엘	기관증명 자율증명	• 이스라엘: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증수출자, 수출자(1천달러 미만)	통일증명서식	12개월
한-캄보디아	기관증명 자율증명	• 캄보디아: 상무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증수출자	통일증명서식	1년
한-인도네시아	기관증명 자율증명(향후)	• 인니: 통상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증수출자(발효후 2년내),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	통일증명서식	1년
한-필리핀	기관증명 자율증명	• 필리핀: 세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인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	통일증명서식	12개월

06 사후 검증도 함께 대비해주세요!

②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의 필요성

수출 시 FTA 특혜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 둔갑·C/O 위·변조 등의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수출자·생산자는 협정관세 적용 배제 또는 벌칙 부과를 피하기 위해 검증 시 요구되는 서류(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를 5년간 보관·관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별 필수 보관 증빙자료, 협정별 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 등의 세부 내용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접속 ② 원산지 검증 ③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후 검증 요청 주요 사례

(1)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수출 품목 검증 사례 예시

- 품명(HS 코드) : 베어링(HS 8482.20호)
- 적용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 한-인도 CEPA / CTH,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사용된 베어링 레이스(링) 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에만 해당
- 문제 상황 : 인도 측 세관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조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검증 요청

* 대응 요령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증빙 서류(원재료 명세서, 원재료 거래관계 증빙자료 등)를 철저히 관리·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

- 문제 상황 : EU 세관 당국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한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

* 대응 요령 : EU 회원국은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검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EU FTA를 활용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 할 경우 '품목별 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은 필수이며, 인증수출자 지위는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유효기간 만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상 협정 규정에 따라 무효한 번호(사업자등록번호·HS 세번 등)를 기재하였는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불일치

- 문제 상황 : 원산지증명서(C/O)와 상업서류(Invoice) 간 내용 불일치 사유(물품가액 기준 오류 또는 단순 오타 기재)로 검증 요청

* 대응 요령 : 협정별 금액 기재 기준(EXW, FOB, CIF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의 작성 조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일치시켜 작성해야 합니다.

✓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의 비교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협정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 30일	수출자, 생산자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 3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	15개월	관세당국
ASEAN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 2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한)세관 (인)발급기관
인도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3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한)세관 (인)발급기관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페루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150일 (직접) 90일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미국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6개월 이내 조사완료, 12개월 이내 결과통지 (직접) 30일 서면요청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튀르키예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	수출자, 생산자
중국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 6개월	(간접) 관세당국
뉴질랜드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 9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수출 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6개월	(한)관세당국 (인)발급기관
콜롬비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 150일 (서면요청시) 30일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중미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 30일	조사대상자
영국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회신기한*	회신주체
RCEP	수출 당사국 발급기관에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시) 30~90일	(간접) 수출 당사자 C/O 발급 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캄보디아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정보의 서면요청, 방문검증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일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일	(간접)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이스라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간접) 10개월 추가 정보 요청 : 90일	(간접)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 2개월 • 추가 정보 요청 : 4개월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일	(간접)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필리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의 서면요청, 방문검증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 검증) 3개월 ※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의 전 과정은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 완료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1개월 ※ 실제 방문 및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및 그 결과의 관세 당국으로의 통지는 최대 6개월 내에 수행	(간접)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직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7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① 인증수출자 제도란?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①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②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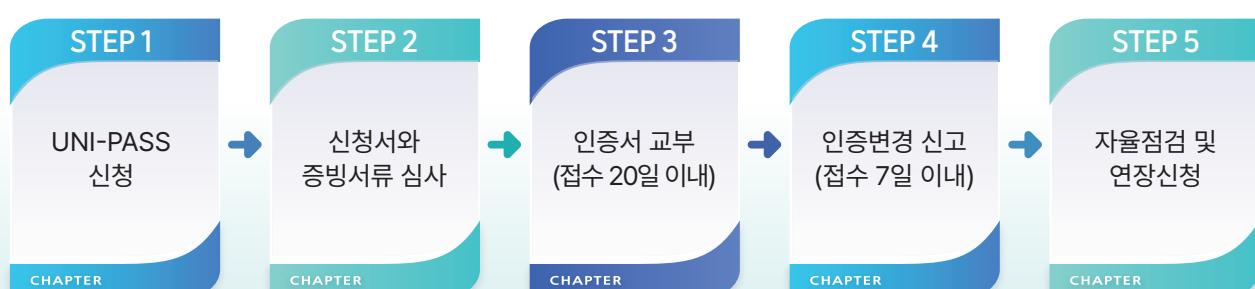
② 인증수출자의 요건과 혜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면 해당 인증기업이 수출하는 모든 협정국,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 취득 시 인증받은 협정과 인증받은 물품에만 혜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한-EU 및 한-영 FTA는 인보이스 금액 6,000유로(EUR)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별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구분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품목(HS 6단위)
유효 기간		5년
인증 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품목(HS 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인증 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 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 품목에 대해 C/O 발급 절차 간소화 가능(인증 협정에만 적용)

③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 절차별 인증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접속 ② 인증수출자 제도 탭 ③ 업무 절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협정	발급방식	인증 前	인증 後
한-EFTA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생략 가능
한-EU 한-영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기관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 한-캄보디아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RCEP -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p>* 유보: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국가별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인도네시아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한-필리핀	자율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 RCEP 체약당사국은 협정 제3.21조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법적이름, 주소, 발급일과 만료일, 인증번호, 인증품목(최소 HS 2단위)" 정보를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공유하며, 2025년 2월 기준으로 RCEP 사무국에 인증수출자 운영 사실을 통지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임

※ 단,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인증수출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판정 교육, 자율점검 실습, 모의 사후관리 점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상·하반기에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에 대한 세부 일정은 추후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본원칙

원산지결정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으로 동 원칙에는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품 기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이 허용되나 생산 공정은 1개국 내에서 충분한 정도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가공원칙 및 충분가공원칙, 운송 도중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음

세번변경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HS 2단위 변경(CC : Change of Chapter)
- HS 4단위 변경(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6단위 변경(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충분가공원칙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역내에서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으로 '충분한 정도의 공정'은 추상적으로는 실질이 변형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공제법 :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면 유리함
제품가격(FOB)-비원산지산 재료비/제품가격(FOB)×100
- 집적법 :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적용하면 쉽게 부가가치비율을 산출 할 수 있음
원산지재료비/제품가격(FOB)×100
- 순원가법 :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방식
상품가격(순원가)-비원산지재료비/상품가격(순원가)×100

누적기준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TA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완전생산기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

특정한 제조법, 가공법, 공정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규정된 가공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으며, 어류·식물성 생산품·석유제품·화학제품·플라스틱·섬유제품 등에 주로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이 FTA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 확인 양식, 증명서는 제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함

[발급신청서류]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수출용재료 원산지 확인서 등)

직접운송원칙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제공 한다는 원칙

다만, 비체약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허용됨

[발급절차]

* 세관 발급



* 상공회의회 발급



역내가공원칙

어떤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 공정이 모두 체약국의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제도상의 기본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은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재료도 원산지 물품일 것을 요하나 역내가공 원칙은 '공정'에 초점을 맞춘 것임

중간재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재료로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말함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제품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산됨

직접운송원칙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칙
다만, 비체약국을 경유(經由)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
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원산지제품으로 인정
하는 예외가 허용됨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세번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함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이나 재료를
둘러싼 원산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 수입상 링크카라(HS4303.10)와 국산 링크반제품(HS4303.10)으
로 링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링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링크
카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8~10%) 이하이므로 링크코트의 원산
지는 국내산으로 인정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며 원산지 입증자료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함

<원산지결정기준 단서조항 해설 FAQ>



FAQ 1. 원산지결정기준 상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협정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FTA	7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208호 또는 제 7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A : 한-중 FTA에서의 HS 7211호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단서규정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HS 세번은 '외국산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HS 7211호가 해당 물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HS 7211호 제품을 만들 때 HS 7208호·7209호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반드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FAQ 2. 선택기준에서의 단서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협정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한-베트남 FTA	21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A : 한-베트남 FTA에서 HS 2106.90호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40% 이상 부가가치기준(RVC 40%)이며,
여기에 특정 세번의 단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CTH를 적용할 경우 단서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RVC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경우 부가가치비율이 40%인 것과 별개로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원재료는 반드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FAQ 3. 단서 규정의 '다만'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협정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FTA	3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제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A : 한-미 FTA에서 HS 3907호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단서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물품의 단서 조항은
제3907호의 제품생산에 사용된 전체폴리머의 중량 중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